

山林經營의 問題點과 對策*

金 樟 株

高麗大學校 農科大學

林業經營의 現況

1. 우리 나라의 林業經營

우리 나라의 산림은 蕃積, 林木種類, 作業種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즉 林木蕃積은 71町步當 9 m^3 이고 이는 獨逸 78 m^3 , 美國 75 m^3 , 日本 0 m^3 , 瑞西 230 m^3 에 比하여 貧弱한 數字를 表示하며 植栽種類도 리기다, 낙엽종 일변도이고 用材林樹種, 速成樹種, 農用林에 適合한 수종으로 나누어 집약적으로 팔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作業種에서도 皆伐作業을 專的으로 채택하고 定期的 主伐形式을 취하고 있는 것보다는 盜伐, 濫伐, 過伐로 인한 伐採量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山林經營이 管理面에서 볼 때 經營以前의 狀態에 놓여져 있음을 알수있다. 經營以前의 狀態라고 하면 經營面에서 山林을 管理하는 것이 아니고 山林所有에 대한 經營意慾이 없거나 財力이 없어서 傳統的 財產의 保有 또는 荒廢된 山林을 改善하지 못하고 있는 狀態를 말한다. 祖先의 墓碑를 가진 산림, 不動產 投機를 목적으로 買入한 山林, 休養의 慾求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山林, 財產 備蓄의 安全을 위하여 所有하고 있는 山林, 農家附近에 있는 山林으로 管理도 않고 營林計劃도 없는 山林, 또는 公有林人規模의 山林中에서도 經營意慾이 없고 資本投資를 하지 않은 山林等이 經營以前의 狀態에 놓여져 있다고 말할수 있다.

2. 外國의 林業經營

우리 나라의 林業經營의 改善策을 論述하기 전에 獨逸, 西瑞, 美國, 日本에 있어서의 林業經營의 概要를 말하기로 한다.

① 獨逸의 經營

獨逸의 林業經營은 地主의 經營의 典型的이라고 볼 수 있는데 法正林思想成立當時 즉 19世紀初期의 東部 獨逸은 (Guts herr)의 領主的性格에 수반되는 부루조 아化와 農民의 賦役農民的性格을 수반하는 푸로페타리아化를 進行하였다. 이동안의 領主는 封建的 資本主義經營에 第一 適應하는 것으로서 林業經營을 고려하고 말구共同體의 森林을 割고 또 農民의 利用을 制限하였다. 또한 19世紀 初期에는 獨逸各國에는 王有林을 國有林으로 編成하였는데 Preusen은 1713年에 이를 實施하고 Bayern, Wurttenberg는 1818年, Sachsen은 1831年에 각각 實시하였다.

Preusen은 1819年以後 平分法을 實施하였고, 法正林思想이 山林經營의 支柱로 된 후 皆伐作業은 廣範圍로 展開되고 地主階級의 規制를 받아 Hundeshagen 등이 主張하는 法正蕃積法과 土地純收穫說에 기인한 短期의 輪伐期는 적용되지 않고 1836年の 施業案取扱規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統制的인 平分法과 山林純收穫說에 가까운 長期의 輪伐期로 適用하고 있다.

또 當時 Sachsen은 Preusen과 같이 收穫規整法을 취하였지만 獨逸連邦의 統一 資本主義의 發展을 背景으로 用材需要의 增加, 鐵道輸送의 發達이 支柱가 되어 1871年以後 林分經濟法을 취하게 되었다.

Sachsen보다 느린 구조를 가진 Preusen은 1910年的 施業案規則草案으로 처음으로 平分法보다 더 前進된 令級法으로 移行하였다.

② 瑞西의 經營

農民의 經營에 가까운 瑞西는 獨逸과 같이 兩極으로 分離되지 않고 部落 및 公共團體有林이 主體이고 國有林은 僅僅히 5%에 不過하다. 또 17世紀 中葉에 所謂 瑞西同盟의 獨立이 承認되었지만 一貫의인 中立政策을 취하여왔다.

18世紀에는 亂伐로 인한 山林의 荒廢와 木材의 缺乏이 생기고, 1798—1815年에는 佛蘭西軍政下에서 山林의 荒廢는 더한층 激化되고 製鍊工業으로 皆伐이 强行되고 있었다. 그러나 19世紀後半에 이를 脫皮하여

*1971年度 臨時總會時 發表된 심포지움

GAYER가 主張하는 擇伐作業으로 轉換하고 長期에 封伐, 上層間伐이 採用되고 있었다. 그러나 H. Biolley가 主張하는 照査法은 20世紀에 이르러 展開되고 있다.

③ 美國의 經營

美國은 獨逸의 地主的 林業經營과 對照의이고 資本主義의 林業經營이라 할수 있다. 經濟林地面積 461百萬 acre의 75%는 私有林이고 國有林은 20%以下로 된다.

私有林은 이때까지 剝伐을 하고 經營問題가 積極的 으로 取扱된 것은 1940年 以後이다. 會社有林은 153萬 acre存在하지만 그중 計劃的한 經營을 하고 있는 것은 25萬 acre이고 20%以下이다. 이는 pulp, 製紙工業등의 發展으로서 더이루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템포가 장차 계속될지 與否는 問題視되고 있다.

美國의 國有林은 처음에 資源保存을 目的으로 한 保存林에서 出發하고 있지만 이것이 19世紀 初期부터 山林資源의 極端한 浪費에 대비하여 設定하였다. 그러므로 國有林의 設定은 19世紀末부터 하여왔는데 主로 買收로서 設定되고 20世紀 初期에는 大部分 買收指正을 實施하고 있다. 國有林의 經營目的은 現在에도 木材生產뿐만 아니라 觀光資源, 畜產資源과 같이 多目的인 것은 그것의 成立過程에도 基因되고 있다.

國有林에서 經營案이 作成된 것은 1920年代이지만 第一 經營이 進步한 것은 產業復與法의 時代 (1933—1935年) 이라고 할수있고, 造林事業도 이시기에着手하고 있다. 現在 그 70%以上에 以하여 收穫保續의 施業이 實行되고 있지만 作業法으로는 皆伐作業 75%, 擇伐作業 25%이고 皆伐作業이 壓倒의으로 많다.

또 現在 收穫規整方式은 Black Hills方式, Hanzlik方式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天然林의 粗放의 擇伐 (回歸 4年, 輪伐期 160年) 또는 漸伐 (更新期 60年)에 適用되고 經營方式은 內容적으로 皆伐作業이 가까운다.

④ 日本의 經營

日本에서는 1945年 以後 絶對主義의 崩壞와 더불어 資本主義가 大幅 進展하였는데 이와같은 情勢를 背景으로 하여 林業에서도 地主的 經營에서 企業的 經營으로 轉換하였다.

하족으로는 官房學으로 생각하였던 法正林思想을 根幹으로하는 森林經營는 企業的 經營에 대하여 否定되고 이에 대항하여 아메리카 經營學을 基礎로하는 林業經營學이 登場하였다. 그러나 林業이 가지고 있는 技術主義는 資本과 貨勞動의 矛盾을 激化하고 林業生產力의 持續的擴大에는 一定한 限界가 생기었다. 이는

林業에서 生產期間의 長期資本의 大量投入, 勞動의 普遍화가 어려운점을 考慮하면 이해할수 있다.

以上 여러나라의 經營의 現實에 立脚하여 우리나라에서 考慮하여야 할 問題點을 列記하면 다음과 같다.

山林經營의 問題點과 對策

1. 우리나라의 山林事情에 適合한 山林經營, 個別的 經營計劃을 中心으로 山林施業計劃을 基초로 한 林業經營을 構想하여 實現하여야 한다.

經營案을 이와같이 작성 되었다고 하면 合理的 經營을 할수있다.

이를 위한 俱現으로 國有林은 集約的經營으로, 民有林에서는 番이 영畠제획만으로 추진 하도록 한다.

2. 木材生產의 增大와 生產性의 向上

木材生產을 增加하고 薪炭生產을 縮減한다. 木材生產은 資本裝備의 高度化와 生產性向上을 도모한다. 育林生產에서 技術的 諸條件下에 勞動生產性의 向上을 많이 期待할수 있으나 政策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生產性向上을 basic的 方向으로 한다.

政策의 俱現으로는 木材生產의 指標을 定한다. 林木蓄積의 增加없이 經營의 合理化를 기할수 없다. 그러므로 营林을 計劃化하고 이를 單元으로 生產의 增大를 도모하여 生產期間을 단축하고 生產集約度의 向上을 가져오도록 하는 長期에 家族的 經營 林業構造를 發展시키도록 推進한다.

3. 林業所得의 指標을 確定한다

山林自體內의 所得 伸長이 아니고 木材生產所得과 薪炭生產所得을 높이도록 政策面에서 적극적인 施策을 강구할 必要가 있다. 元來 小企業 또는 家業의 林業經營에서 木材生產所得의 大部分이 勤勞所得인 것이다. 勤勞所得의 增大는 農山村 經濟를 調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所得의 均衡的 增大의 問題點으로는 雇傭勞力의 依賴 大規模 經營體 (國公有林丘 包含)는 價格의 適正化이고 이는 木材需給의 現況으로 보아 有利한 立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林業勞務者는 林業勞動의 季節性, 不連續性의 就業不能 또는 生產低下를 遭자하고 특히 林業勞務者는 勞賃의 低位로서 漸次타롭 產業에 轉化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對策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恒久的雇勞務系統 또는 雇傭增大를 위한 業務限界量을 가진도록 力求하여야 한다.

4. 豊算의 確保

우리나라는 1970년도 4800億원의 豊算에서 1%가 넘는 60億으로 林業豫算을 充當하고 있는데 日本에서는 一般會計 644億, 國有林特別會計 1428億, 保險關係 20億, 造林公社 102億으로 2200億가까운 豊算을 쓰고 있다. 또한 造林을 보아도 日本에서는 1ha당 300,000 원, 이스라엘 1,000,000원, 韓國에서는 25,000원으로 勞賃이 廉價임을 알 수 있고 이와같은 豊算과 造林單位費로는 管理面을 考慮할 때에 理想의 으로 經營할 수 있는 與件을 주는 것이 아니고 數字的으로 表面에서만 일률 한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며 內面의 으로 檢討할 餘地가 많은 것이다.

5. 行政投融資의 必要性 특히 長期低利融資의 必要性이 強調된다. 從前에는 投融資는 森林資源의 保續維持 특히 資源政策에 活用되어 왔으나 금후에는 生產性的 向上, 經營規模의 適正化, 經營의 協業化에 重點을 두고 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문제는 林業所得의 確保 또는 增大와 관계되는 點에서 力盡하여야 한다.

6. 山林과 Recreation에 관한 役割을 重點의 으로 다루어야 하고 經營問題도 이와 關聯하여야 한다.

南 定 謹

國會 農林分科 專門委員

林業經營의 合理化 方案

經濟產業으로써의 林業을 科學的 根據 위에서 合理의 으로 經營하여 그 實效를 舉揚해야 되겠다는 念願은 確實히 우리 林學徒들에게 부여된 切實한 命題라고 생각된다.

이 課題에 對하여 理論的이고 概括的인 解答은 이미 先進林業國家의 優學들에 의하여 많이 研究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되나 우리는 지금 韓國의 山林을 對象으로 또 韓國의 諸與件을 直視하며 이 命題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問題意識이 보다 錯雜하고 또 안타까움을 禁할 수 없는 가운데 林業經營의 合理的 方案을追求해 보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沈鍾燮博士와 金鐘洙博士가 이미 林業經營의 内部 要因에 대하여 깊숙히 分析하고 檢討하여 그 問題點과 對策等에 關하여 論筆한 바 있으므로

筆者は 위와는 다소 角度를 달리하여 이 문제를 考察하고자 한다. 즉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林業經營을 수행하기 위해서 要求되고 있는 몇 가지 先行條件 특히 林業經營의 基盤造成이 먼저 俱現되어야 하겠다는 概點에서 現行 山林制度 및 施策, 기타 林業經營에 關聯되는 與件等에 關하의 考察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事前에 諒解를 얻고자함은 筆者の 事情에 의하여 筆者が 심포지움에서 發表한 事項의 主要項目만을 記筆함을 최종하게 생각한다.

1. 民有林所有規模의 零細性

- ① 由來
- ② 蓄積貧困
- ③ 山主의 無能, 無力, 參與意識缺乏
- ④ 山地改革 不可
- ⑤ 不在山主

2. 山林保護體制의 虛點

- ① 保護面積의 過多
- ② 山林契活動의 微弱
- ③ 林產物團束法의 頗難 및 惡用
- ④ 病蟲害豫察 및 驅除業務의 一貫性 缺如

3. 造林施策의 虛點

- ① 補助造林 一邊倒
- ② 事後管理疎忽 (豫算不足理由)
- ③ 勞賃不計上은 事業疎忽自招
- ④ 苗木生產需給過程의 雜音, 不協和相
- ⑤ 山主의 參與度의 全無

4. 林業基金制度時急

- ① 長期低利資金創設의 時急
- ② 篤林家育成方案의 時急

5. 山林에 對한 所有權, 經營權, 行政權을 分離할 것 大單位 團地造林事業等으로 力點을 두고 있으나 助長行政을 本務로 하고 있는 行政機關이 山林經營에 까지 깊숙히 干涉하는 現狀은 不條理하므로 經營上體를 만들어 責任 있는 經營을 수행해 나가도록 山林經營構造의 改善이 必要切實하다.

6. 山林行政機構의 虛點

農林部 外廳으로 山林廳이 發足하였다면 地方組織도 이에 副應해야 함이 타당함에 不拘하고 頭大尾小格으로 道郡面等 一線實務陣은 上部에서의 公文沙汰豆거의 重複 또는 마비상태에 處하고 있는 現實이다.

7. 林業技術者養成 및 優待

林業試驗場이나 林木育種研究所를 비롯한 試驗研究機關의 活用策과 優秀한 技術者나 研究師等의 人的資

源頭營育技術的이고 累取社 施策의 必要하다.

8. 現實化追求時急

造林, 砂防, 保護, 林產等等 各種事業을 展開하는 過程에 物價, 勞賃等의 舊動실정을 直視하고 總事業量을 減縮하는 限이 있다 라고 單費現實化를 期하여 各種現實化 施策을 採擇할 것이 要望된다.

9. 山主參與方案 및 與件造成이 必要

- ① 資金面
- ② 稅制面

10. 結論

以上에서 山林行政에 對한 몇가지 問題點을 들었으나 이에 앞에서 説解를 구한마와같이 이것들은 林業經營 그 자체에 對한 아까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山林行政遂行에 따른 斷片的且 離面而 言及하였거나 외筆者生覺으로서는 이의를 問題點을 면치 다루어 주어서 어느 程度整地作業이 先行되어야만 우리나라의 山林經營이 科學的이고도 合理的으로 수행되어 나가게 될 것으로 믿어 진다.

沈 鍾燮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山林利用面에서 본 山林經營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산림경영 實態를 보면 많은 問題點을 内包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우리들의 關心를 끄는 것은 山林의 主產物인 木材의 生產利用을 위하여 우리나라 山林經營이 어느 程度合理的으로 運營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問題다. 既知 하는바와 같이 山林을 經營하는 目的에 두가지가 있다. 첫째 主產物인 木材生產을 하여 林利를 增進시키기 為往 경우와 출판 산림을 보호保育하므로서 주자원 함양을 위치하여 토양보존, 보전위생 그밖에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상점적인 경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荒蕪地의 土砂流出 防止와 無立本地 또는 不完全林地의 造林을 為主로 한 나머지 主產物인 木材生產을 위한 山林經營 보다는 오히려 前者인 國土保存에 重點을 두어온 경향이 크다. 따라서 全體의 面에서 보면 우리나라 山林經營은 本然의 軌道 위에 安定되어 있지를 않고 經營이 不在狀態에 놓여 있는것이 現實이다.

林業이 하나의 產業으로서 生產任務을達成하고 따

라 充分한 企業的 利用을 產出 할수 있다면 그 경영을 산림의 主產物인 木材利用面에서 檢討되고 이목적 달성을 위한 經營이 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나라 山林經營面의 문제점을 점토하여 고고쳐한다.

첫째：造林樹種 선택面에서

큰 면에서의 山林經營이라면 그 계획에 있어서 合理的인 경영을 위하여 어떠한 樹種을 선택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初步的인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 조림수종은 이러한 面에서 너무 거리가 멀것들이 있지 않을까? 木材生產을 為主로 하는 것이라면 좀더 材木價值가 있고 生產性도 높은 수종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참나무가 이용도가 높으면 각자 참나무를 이용할 極적으로 조림이 시작되고 또한 무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에 활무용재 生產이 목적이라면 활무재로서 좋은 소나무, 햇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선택되어 조림되고 무록되어 單位면적당 生產이 가장 많도록 무록되고 또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優良을 우리나라의 造林樹種은 그 利用價值가 적은 것을 알면서도 立地條件의 良否를 不問하고 生產된 苗木를 아무데나 造林하여 옳것이 事實이다. 今后에 와서 生覺하면 너무 利用을 無視한 造林이 아니었던가 한다.

둘째：確固한 利用目標生設는 山林經營 즉 造林을 하여 어느정도 林業이 成就되고 山林形態를 갖추어 가고 除伐、間伐等의 무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을 아니라 그 造林에서 어떠한 用途가 何를 生產할 것인가의 目標가 있다. 또한 그 目標를 세우기도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最大的 林利를 追求할수도 없다. 즉 어느 程度의 樹合에 到達하면 그리고 若干의 商品價值가 있다고 生覺하면 山主는 伐採을 하면서 한다. 다시 말하여 山主들에게 當初부터 利用目標가 缺如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萬古에 山林經營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造林當初부터 이 산림은 일제 무순 極적으로 伐採利用될 것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 또 그 目的을 위하여 一定한 目標에 到達할 때까지 무순을 經營努力이 要請된다.

셋째：经营이 用途에 따른 需要에 鈍感하다. 最近 木材利用面에 急速히 發展을 가져왔고 또한 계속 發展하게 가고 있다. 과去와 같이 長大材의 物論 需要가 크지만 사용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는 반듯이 長大材 生產면을 위주로 山林經營의 林利를 增大 시킨다고 生覺할수 있게 되었다. 즉 세계적으로 長大材의 生產可能地域이 기이 결정 되어 있다실이 되어있고 反面에 Pulp 제작등 가공 生產품에 대한 要求度가 날로 增加

되어 감에 따라서 이와같은 原料生產을 為上로 하는
山林의 새로운 經營方針이 山林資源 缺乏國間에 크게
주효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長大材 生產을 하려면 60~
70년을 기다려 收獲을 하여야 하지만 팔푸재와 같은
原料材를 生產하려면 20~30년이면 足하다. 또한 町當
本數를 2倍 또는 3倍로 增加 할수도 있다. 즉 年限을
短縮하고 植栽量을 增加하여 ha당 生產량을 倍增하여
林利를 올리고 있는 時代的 要請이나, 自國의 資源與
件을 充分に 活用하는 經營이 流行되고 있는 此際에
우리나라의 現實은 感覺조차 없는 것 같다.

넷째 : 이용면과 결부시킨 政策의 貧困과 기술적 指
導의 未洽 즉 生산을 獎勵하면 곧 利用을 考慮한 政策의
配慮가 있어야 함에도 不顧하고 이와같은 政策의
뒷받침이 따라가치를 못하다보니 經營이 中斷 또는 放
置상태에 빠지기 쉽다. 한편 技術的指導가 잘 되어 있
지를 않기 때문에 利用目的에 符合되는 山林經營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國有林 經營을 例로
들면 經營案에 伐期 40~50년이라는 것은 定하여져 있으나 수종별, 용도별 별기 결정은 거이 않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一定한 時期에 伐採하면 무슨 目的이든간에 利用될것이라는前提下에 累積經營 이면서도 不安
定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물며 經營기술이 없는
民有林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
實情이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보았으나 이와같은 문제
점은 例示에 不過한 것이며 우리가 참된合理的인 山
林經營을 한다면 最終目的인 木材의 利用과 密接한 關
聯 밑에서 모一든 經營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間接目的을 위한 山林經營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面들이 감안된 경영다운 山林
經營이 이루어 지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